

# 2016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45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4.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 I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 1. 제안이유

-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9조 9,043억 5,069만원으로,  
기정예산 27조 5,037억 5,762만원  
대비하여 8.7%(2조 4,005억 9,307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조 9,7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1조 8,017억 9,223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조 9,331억 4,9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988억 85만원) 증가하였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b>계</b>	<b>29,904,351</b>	<b>27,503,758</b>	<b>2,400,593</b>	<b>8.7</b>
일반회계	20,971,201	19,169,409	1,801,792	9.4
특별회계	8,933,150	8,334,349	598,801	7.2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61억 9,886만원으로, 기정예산 1,479억 26만원 대비하여 1.2%(17억 1백만원) 감소하였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b>계</b>	<b>146,199</b>	<b>147,900</b>	<b>△1,701</b>	<b>△1.2</b>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220	220	-	-
	재 무 활 동	1,153	1,153	-	-
	사 업 비	144,826	146,528	△1,701	△1.2

3.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내역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8억 1,652만원, 사회보험료 추가 사업비 교부 2억 2,400만원으로 10억 4,052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내역은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7억 1,52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중소기업 고용지원 13억 9,060만원, 민간위탁 고용개선 10억, 사회적 경제 시장 활성화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안 편성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내역
일자리노동정책관	(×14,900,220) 146,198,861	(×13,859,700) 147,900,261	(×1,040,520) △1,701,400	5개 세부항목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088,520) 2,466,200	(×1,272,000) 1,751,000	(×816,520) 715,200	민간경상사업보조 715,200
중소기업고용지원	1,265,400	2,656,000	△1,390,600	민간경상사업보조 △1,390,600
민간위탁고용개선	50,000	1,050,000	△1,000,000	민간위탁금 △1,000,00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425,000	675,000	△250,000	사무관리비 △110,000 민간위탁금 △140,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238,000) 1,672,000	(×1,014,000) 1,448,000	(×224,000) 224,000	기타회계전출금 1,166,000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각 사업별 현황 및 검토의견

가. 세입

- 금번 일자리노동정책관에는 모두 2건의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 추경안〉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088,520	1,272,000	816,52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816,520
국고보조금 (사회보험료 추가사업비교부)	1,238,000	1,014,000	224,000	사회보험료 추가사업비 교부 224,000

- 이 중 8억 1,652만원의 세입예산 증가분은 정부주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 중 정부가 사업별 추가 보조금을 교부한 것임.
- 사회보험료 추가사업비 세입 증가분인 2억 2,400만원은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정부로부터 이관될 때 미지급됐던 ‘15년도 4분기 사회보험료에 대한 추가교부금으로 두 건의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후 추경안에 반영한 것임.

## 나. 세출

- 금번 일자리노동정책관에는 모두 5건의 세출예산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음.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 추경안〉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역
일자리노동정책관	(×14,900,220) 146,198,861	(×13,859,700) 147,900,261	(×1,040,520) △1,701,400	5개 세부항목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088,520) 2,466,200	(×1,272,000) 1,751,000	(×816,520) 715,200	민간경상사업보조 715,200
중소기업고용지원	1,265,400	2,656,000	△1,390,600	민간경상사업보조 △1,390,600
민간위탁고용개선	50,000	1,050,000	△1,000,000	민간위탁금 △1,000,00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425,000	675,000	△250,000	사무관리비 △110,000 민간위탁금 △140,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238,000) 1,672,000	(×1,014,000) 1,448,000	(×224,000) 224,000	기타회계전출금 1,166,000

###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본 사업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후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서울시(이하 “시”)는 서울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일자리 목표공시제 컨설팅, 청년친화 강소기업 홍보대회, 금융권 퇴직자 재취업 지원과정 등 6가지의 사업을 지원 중임.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경상 사업보조	(×2,088,520) 2,466,200	(×1,272,000) 1,751,000	(×816,520) 715,200  시비 △10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용전략포럼 : 65,000(X39,000)</li> <li>·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 139,000(X83,000)</li> <li>·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 355,000(X284,000)</li> <li>· 성장유망업종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 : 1,545,500(X1,425,500)</li> <li>· 청년친화 강소기업 홍보대회 : 146,000(X87,600)</li> <li>· 금융권퇴직자 재취업 지원과정 : 115,700(X69,420)</li> <li>· 봉제인력 일자리창출 : 100,000(X100,000)</li> </ul>

- 동 사업은 당초 국고내시액의 축소를 반영하고, 추가로 고용창출 지원사업비 (성장유망업종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 14억 2천 5백만원이 내시되어 국고 보조금이 총 20억 8천 8백만원으로 조정되고, 국고 내시액이 축소됨에 따라 대응 시비 1억 1백만원을 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중소기업 고용지원

- 시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업과 우수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형 강소기업, 4대 제조업, 시 일자리 협력기업 등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에는 월 6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청년구직자에게는 월 4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은 2016년 고용지원 대상기업이 8~9월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고용지원금 전액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올해 가능한 지원분인 8억 5,940만원을 제외한 13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 고용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65,400	2,656,000	△1,390,600	
사무관리비	406,000	406,000	-	
민간경상보조	859,400	2,250,000	△1,39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고용지원금 집행예정액 : 702,000천원</li> <li>- 서울형 강소기업, 4대 제조업 등 : 702,000천원</li> <li>○ '16년 총 예상집행액 : 859,400천원</li> <li>- 157,400천원(기 지출액) + 702,000천원(추가집행)</li> </ul>

- 시에서 직접 공모·선정하는 사업의 경우 이전에도 하반기에 대상이 선정되고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이를 고려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또한 본 사업은 지원금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10개월 이후에도 구직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의 노력이 필요함.

## 3. 민간위탁 고용개선

- 시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근로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

화비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16년 기준 7,145원) 중이며, 올해 7월부터는 시의 민간위탁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생활임금 적용분야 확대 계획에 따라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전할 10억원을 편성한 것임.
- 금번 추경안은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생활임금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이 가능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한 본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민간위탁 고용개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0,000	1,050,000	△1,000,000	
민 간 위 탁 금	-	1,000,000	△1,000,000	· 민간위탁 근로자 생활임금 보전
연 구 용 역 비	50,000	50,000	-	·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표준모델 개발연구

- 그러나 생활임금에 대한 보전액은 2015회계연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 각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의 자체예산으로 보전이 가능하여, 96%의 불용률이 발생한 바 있음.
-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생활임금에 대한 보전으로 10억원이라는 금액의 편성이 필요했는지 의문임.
- 2015년 회계연도 유사 사업의 불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초 예산은 과도한 편성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편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임.
- 시는 함께누리몰의 운영,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및 민간 시장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16년 6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감추경하고자 함.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25,000	675,000	△250,000	
사 무 관 리 비	85,000	195,000	△110,000	권역별 공공조달 물류센터 절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0	
민 간 위 탁 금	335,000	475,000	△140,000	해외사례지방문, 공공조달사이트 개발비 등 절감

- 당초 1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권역별 공공조달 물류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이 권역별 물류센터를 설치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 조성 이후로 물류센터 설치를 미루어,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임.
- 또한 3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했던 민간위탁금 중 공공조달 의무공시 사이트 개발 비용은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활용을 통해 별도로 편성한 사이트 개발비 항목을 절감하여 이에 대한 1억 4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함.
- 기존의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절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권역별 물류센터 설치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 등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명시이월

- 금번 일자리노동정책관에는 1건의 명시이월이 있으며, 348억 9천 7백만원임.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서울시 강북근로자 복지관 운영	계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진을 위해 舊상하수도협회(상수도사업본부)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초 임차이전을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여 '16. 12월 설계발주, '17. 3월 착공 예정으로,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 이월 예정	계	계	'16. 12월 설계발주 후 설계공모 및 설계기간을 감안하여 '17. 3월 착공 예정으로, '16년 집행 예정인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 이월 예정
	시설비		3,398,727	3,398,727	
	감리비		34,000	34,000	
	시설부대비		57,000	57,000	

- 본 추경안은 2016회계연도의 이월이 예상되는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위치한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함에 따라 복지관에 이전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전할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의 발생이나 예산의 추가 증액·삭감 등 경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며, 명시이월<sup>1)</sup>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사항이나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임.
- 동 사업은 2015년부터 편성되어 시설의 이관을 준비해왔던 바 위탁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의 및 세부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1)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